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3136
----------	------

발의연월일 : 2025년 8월 일

발 의 자 : 오 승 철 의원

1. 제안이유

가. 현행 규칙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하고 있어, 의회 임기 등과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나. 이에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의회 상황에 맞춰 임기를 유연하게 정함으로써,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 의장이 정하도록’ 변경함 (안 제5조의2제3항)

3. 검토의견

가. 입법 필요성

- 현행 규칙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하고 있어 의회 임기 및 위원 구성의 연속성·안정성 등과의 정합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 의장의 위원 위촉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의회 전체 임기와 자문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조화롭게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나. 입법 적정성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은 의원 징계 등 윤리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여,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다. 법적 타당성

- 소관 사무 원칙: 「지방자치법」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따라 지방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은 의회의 자치입법권 범위에 속함.

라. 결론

-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